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5. 30 선고 2023가합10148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최민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원

담당변호사 류종완

변론 종결2024. 4. 18.

판결 선고2024. 5.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447,603원 및 그 중 98,537,854원에 대하여는 201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7,861,603원에 대하여는 2024. 3.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하고, 2018.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되었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와 C은 2009. 11. 17. 차량에 관한 시설대여 계약(대여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월 리스료 2,161,600원, 약정기간 44개월, 연체이율 24%) 체결하였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차량은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피고는 C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제33조).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C이 리스료 등의 지급의무를 1회라도 위반한 경우 원고는 C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한 후 해당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5조 제2항), 해지 후 C이 제29조에 의한 차량반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지일 기준 미회수원금 + 해지일 이후 발생한 차량유지비용(보험료, 제세공과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제27조 제2항).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인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위 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다룬다.

나. 판단

1)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0. 8. 18. 창원지방법원에 C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리스료 등 98,586,000원 및 그 중 98,537,85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5. 20. C 및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0가단38147, 청구원인상 이 사건 계약의 주채무자는 C, 보증채무자는 피고로 되어 있다),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위 판결은 2011. 6. 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리스료 등 채권'이라 하고, 이 사건 차량 미반납에 따른 비용 상당의 채권과 통칭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소유의 경남 거창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6. 17.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2010카단185). 소외 E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해당 토지는 2011. 10. 31. E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4. 3. 19. 창원지방법원에 2014하단448, 2014하면451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5. 1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15. 5. 27.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그 채권자 목록에 원고와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한 이 사건 선행판결은 소장, 판결정본 등의 송달이 모두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주채무자인 C의 대표이사로 명의상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F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것은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3개월이 지난 뒤인 점, ④ 그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는 2013년경 당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통화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6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직접 연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채권의 성격 및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피고의 책임도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판사김병국

판사김용석

판사성재준